

대한테니스협회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자외선 차단 마스크 착용 제한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테니스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체육회 “국민신문고” 및 여러 채널로 자외선 차단 마스크 착용에 대한 개선 요청을 하셔서 대한테니스협회의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근거 규정 제시

가. 대한테니스협회는 국제테니스연맹(ITF)의 「테니스 규칙(Rules of Tennis)」 과 은퇴선수 · 동호인 대상의 「ITF World Tennis Masters Tour」 규정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테니스연맹 규정에는 마스크 착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단, 선수의 스포츠맨십과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테니스 복장 및 경기질서 유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8p)

ITF 규정에 ‘맨발로 경기하면 안된다’ 는 조항이 없는 것과 동일하게 스포츠맨십과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테니스 복장 및 경기질서 유지의 원칙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나. 대한테니스협회는 국제테니스연맹(ITF)의 이러한 국제 규정의 취지를 바탕으로 국내 생활체육대회의 운영 특성(선수 식별, 경기의 공정성, 경기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 확보)를 고려하여 얼굴을 가리는 복장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적용하고 있습니다.

다. 추가적으로 복장에 대한 규정은 아니지만 선수는 아래의 규범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3p)

- 스포츠맨십 유지
- 심판 권한 존중
- 상대 선수 존중
- 관중 존중
- 그 밖의 관계자의 권리 존중

ITF World Tennis Master Tour Regulations 발췌

88p

C. Dress and Equipment

Every player shall dress and present himself/herself for play in a professional manner. Clean and customarily acceptable tennis attire shall be worn.

Any player who violates this Section may be ordered by the Court Official or Referee to change his/her attire or equipment immediately. Failure of a player to comply with such order may result in an immediate default. (The ITF reserves the right to interpret the following rules so as to give effect to the intent and purposes of these Regulations).

1. Unacceptable Attire

Inappropriate attire shall not be worn during a match (including the warm-up). Players may wear warm-up clothing during the warm-up and during the match provided it complies with the foregoing provisions.

93p

L. Unsportsmanlike Conduct

Players and Team Members shall at all times conduct themselves in a sportsmanlike manner and give due regard to the authority of officials and the rights of opponents, spectators, and others. If such violation occurs during a match (including the warm-up), the player shall be penalised in accordance with the Point Penalty Schedule below. In circumstances that are flagrant and particularly injurious to the success of a tournament, or are singularly egregious, a single violation of this Section shall also constitute the Major Offence of Aggravated Behaviour and shall be subject to the additional penalties below.

For the purposes of this Rule, Unsportsmanlike Conduct is defined as any misconduct by a player that is clearly abusive or detrimental to the Competition, the ITF, or the sport of tennis. In addition, unsportsmanlike conduct shall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the giving, making, issuing, authorising, or endorsing any public statement having, or designed to have, an effect prejudicial or detrimental to the best interests of the tournament and/or the officiating thereof.

2. 대리출전 방지 논리의 실요성 의문 / 3. 대안적 신원확인 방식 미검토

마스크 착용 금지의 주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국제테니스연맹 규정의 취지를 바탕으로 국내 생활체육대회의 운영 특성을 고려한 운영기준에 따른 것이며, 대리출전 방지의 목적은 한 부분입니다.

국내 생활체육대회 특성 상, 체어업파이어 없이 오프코트심판 또는 셀프저지경기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경기를 한다면, 사전에 등록된 선수 본인이 맞는지, 경기 중 선수교체, 대리출전, 경기장 이동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경기 전 1회의 신원 확인만으로는 동일인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판정 기준의 모호성**

'눈 부위만 노출된 마스크'와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 간의 경계가 현장에서 주관적이고 모호하여, 진행요원과 참가자 간의 또 다른 마찰과 형평성 시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경기 지연 및 진행 차질**

매 경기 또는 이의 제기 시마다 마스크를 벗어 신원을 확인하고 빙스(번호표)를 별도로 부착·관리하는 방식은, 타이트하게 진행되는 생활체육대회 특성상 심각한 경기 지연을 초래합니다.

- **비언어적 소통 방해**

테니스는 상대 선수 및 심판과의 표정, 시선 등 비언어적 소통이 경기 매너와 판정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얼굴 하단부를 지속해서 가리는 것은 경기 운영 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타 종목과의 형평성

마라톤, 사이클, 골프, 야구 등 타 종목과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에 대한 것은 테니스는 타 종목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경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1:1 대립형 대전(對戰) 종목**

마라톤, 사이클과 같은 기록/순위형 종목이나 골프와 같은 기록형 개인 종목과 달리, 테니스는 코트를 사이에 두고 상대방과 직접 대립하며 정면으로 대치하는 대전(對戰) 스포츠입니다.

- **상대방에 대한 매너 및 공정성**

상대 선수의 식별 가능성, 경기 중 매너, 표정을 통한 소통 등은 테니스 고유의 에티켓이자 경기 규칙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따라서 타 종목의 복장 기준을 1:1 대치형 종목인 테니스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5. 프로페셔널 복장 원칙의 적용 범위

생활체육대회라 하더라도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 ITF Masters Tour 규정 적용

생활체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ITF Masters Tour 규정(SECTION I & III)에서도 참가 선수들에게 정식 테니스 복장 준수와 매너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질서 있는 대회 환경 조성

'프로 수준의 엄격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호인이 참가하는 대회에서 최소한의 규율과 일정한 복장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대회 품격을 높이고 참가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생활체육대회는 유튜브 또는 TV 방송으로도 중계가 되고 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경기에 임한다면 어떨까요? 예선 참가 선수는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고 결승 진출 선수는 안된다 할 수 있을까요?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는 제약이 없겠지만, 대한테니스협회가 승인한 정규 대회인 전국동호인랭킹대회, 시·도 대항대회, 디비전리그 등 생활체육대회는 개인·시도·소속 클럽의 명예, 랭킹, 상금(품)과 직결되어 전문체육 선수 못지 않은 열정과 승부, 대가가 부여되는 대회이므로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6. 건강권 관련 요청

참가자의 건강권, 경기 안전은 매우 중요하고 존중합니다.

또한 격렬한 경기 중에 발생하는 응급상황 (탈진, 과호흡, 열사병, 급성질환 등) 에서 선수의 안전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응급상황이 노출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불상사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 심판의 판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선수는 모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팔토시, 레깅스, 기능성 의류 등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니스가 실외 장시간 노출되는 경기이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자외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는 테니스 종목을 이해하고 때로는 본인이 감수하여 선택하는 것이며,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선수 본인이 판단하고 준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앞으로도 참가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국제 규정의 취지와 국내 생활체육대회의 운영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기의 공정성, 선수 안전 및 참가자의 권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 내용은

대한테니스협회 생활체육위원회, 랭킹대회 감독관 회의 등에서 논의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국제테니스연맹(ITF) [「테니스 규칙\(Rules of Tennis\)」](#)  클릭

○ 국제테니스연맹(ITF) [「World Tennis Masters Tour Regulations」](#)  클릭